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에 관한 연구

조 병 인*

손 창 완**

국문요약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력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태도나 처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폭력조직들이 주로 개입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활동영역과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2006년에 대검찰청의 용역연구과제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의 실증자료를 재분석해보는 방법을 따랐다. 실증조사자료 분석결과를 (1) 폭력조직의 불법소득원 산재, (2) 폭력조직의 기업화 추세, (3)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4)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5)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6)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7)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8) 국민의 수사협력의지 미약, (9) 폭력조직의 인적 기반구조 견고 등의 소재목으로 정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을 추방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특수범죄연구센터장/조직폭력범죄연구사업단장), 법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경무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폭력조직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불로소득이나 음성수입이 많은 곳, 탈세를 하기 쉬운 곳은 어김없이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¹⁾ 부동산투기에 개입하여 위장거래를 부추기고, 이해관계가 얽힌 분양과정에 개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경매절차나 건설공사 입찰이나 건축자재 공급과정에 개입하여 막대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챙긴다. ‘돈’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폭력이 끼어들어 한몫씩 챙기고 있고, ‘비리’가 있는 곳에도 어김없이 폭력이 개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²⁾

그러므로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폭력조직과 국민생활의 불가분적 상호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조직과 조직폭력배들은 국민생활과 떨어져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폭력조직과 국민생활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왔다.

첫째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력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조직폭력배들은 국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현실세계에서

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1년, 351-351쪽.

2) 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55-80쪽; 이진한, “조직폭력사범의 실태 및 법률적용상의 문제”, 「강력검사연구논문집(IV)」, 대검찰청, 1994, 10-12쪽;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5, 19-32쪽;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58-85쪽; 송태종,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범죄론 및 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대학원, 2005, 34-48쪽; 전대양·송병호, 「조직범죄론」, 형설출판사, 2004, 49-63쪽; 안홍진, 「한국조직폭력의 실태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 (주)정문사, 2004, 149-182쪽; 2) 이철희, “국내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 조직폭력수사 역량 강화 work-shop 자료, 경찰청, 2004, 7-12쪽; 이진권,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5, 84-98쪽.

합·불법의 거래이익을 독식할 뿐 아니라, 가상세계에도 도박·음란물·금지품·청부폭력 등과 관련되는 유해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폭력조직이 기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리사회 곳곳에 조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태도나 처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보복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도, 조직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비호하여 폭력조직의 생존을 돕는 셈이 된다.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을 소송으로 풀기보다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국민이야말로 폭력조직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장본인이라 할 것이다. 원대한 포부를 키워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의 행동거지를 선망하여 폭력조직의 하수인으로 따라다니는 경우도 같다.

이 연구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이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두 가설은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을 추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폭력조직들이 주로 개입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활동영역과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론으로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을 소상히 드러냄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단서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 연구의 핵심적 개념에 해당하는 ‘조직폭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복수의 폭력배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위협 또는 물리력을 행세하거나 혹은 이해관계, 이권분쟁, 불법영업, 입찰경쟁, 불법유통, 불법알선, 공급독점, 질차위반, 청부폭력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실증조사 결과에 입각한 실태분석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에 관한 정보들은 우리사회로부터 조직폭력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들에 투영되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Ⅱ.에서는 폭력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소득원의 다양한 유형과 폭력조직들의 개입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불법수익기반의 다원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 폭력조직의 범죄개입실태, (2) “강”급 폭력조직의 범죄개입실태, (3) 신흥폭력조직들의 범법영역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다음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편승한 폭력조직의 기업화 추세에 주목하여 기업형 폭력조직의 할거실태와 범죄개입실태를 자세하게 고찰해보았다.

Ⅲ.에서는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존공생하는 계층이 있다는 판단을 입증해보았다. 폭력조직에 대한 국민의 비호는 피해신고 기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1) 조직폭력피해 신고실태, (2) 조직폭력수사를 위한 협조태도, (3) 신고기피 및 협조거부의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다음은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우호감정을 가지는 국민이 있다는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1) 폭력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호감, (2)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3) 국민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4) 폭력조직의 ‘공생단계’ 근접 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세 번째로는 폭력조직을 떠받치는 인적기반에 주목하여 (1) 제2선의 ‘막후세력’, (2) 폭력조직의 하부구조, (3) 전국의 신흥폭력조직, (4) 폭력조직의 예비세력 규모 등을 순차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Ⅳ장은 실증자료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내용들을 요약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따름으로써 ‘조직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단서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대검찰청의 의뢰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 가운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³⁾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폭력

조직의 생존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료를 수집한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굳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수고를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충실하게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적용된 방법은 위의 대검찰청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된 방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서,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II. 폭력조직의 불법소득원

1. 폭력조직의 불법행위 실태

폭력조직들의 범죄개입 내역은 폭력조직이 우리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제1차적 관심사에 해당된다. <표 2-1>은 2005년 1년 동안의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별 사건처리현황을 토대로 전국에서 할거중인 폭력조직들이 범법영역에 개입하다 적발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2005년 1년 동안 11종에 이르는 사회영역에서 604개에 이르는 폭력조직이 불법행위로 수익을 올리다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실상은 국민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폭력조직의 생존에 적합한 소득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에서 보면, 2005년 1년 동안 폭력조직의 개입이 가장 많았던 영역은 ‘연예인 및 유흥업소 갈취’로 전국에 자생하는 368개 폭력조직의 절반을 넘는 192개(52.2%)가 이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권분쟁에 개입하여 폭력행사를 대행해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적발된 이른바 ‘청부폭력’조직이 121개(32.9%), ‘사행성 불법영업(도박·경마 등)’에 개입하다 적발된 조직이 101개(27.4%), ‘불법 및 변태영업’에 개입하다 적발된 조직이 63개(17.1%) 등

3) 조병인 외,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6년 10월 참조.

으로 나타나 있다.

<표 2-1> 범법영역별 폭력조직 개입실태

(단위 : 개, %)

구 분	개입조직(개)	개입율(%)*
연예인·유흥업소 갈취	192	52.2
폭력행사 대행(청부폭력)	121	32.9
사행성 불법영업(도박, 경마 등)	101	27.4
불법 및 변태영업	63	17.1
변칙적 위장사업	37	10.1
탈세·불법사채업	26	7.1
경매 및 입찰 개입	23	6.3
마약류불법유통	19	5.2
인신·성매매 개입	12	3.3
부동산투기 개입	8	2.2
기타(정치·종교·노사분규 개입, 밀수·밀입국 등)	22	6.0

* 전국 각지에서 검찰에 파악된 368개 폭력조직 가운데 해당 범법행위에 개입하다 적발된 폭력조직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대검찰청 용역연구보고서 117쪽 참조].

이 중 ‘사행성 불법영업(도박, 경마 등) 개입’은 폭력조직이 성인 오락 게임장을 직접 개입하여 승률조작 등의 불법영업을 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한 운영참여 혹은 영업장에서 경품으로 사용되는 ‘상품권 발행업체’ 운영 혹은 자본금출자, 아니면 아예 상품권의 유통망을 독점하여 나라 전체를 ‘도박공화국’으로 둔갑시킨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분석자료는, 막대한 이권사업인 성인오락실 영업장 관리와 ‘경품용 상품권’ 유통망을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⁴⁾

‘변칙적 위장사업’에 개입하다가 적발된 조직도 37개(10.1%)에 이르러 조직폭력배가 사회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공생단계에 근접 또는 도달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⁵⁾ 그밖에도 ‘탈세·불법사채업’ 개입

4) 한겨레신문, 2006년 8월 25일자 “국정원 조폭이 상품권 유통망 장악” 기사 참조.

5) 1980년대 미국 뉴저지주의 검사로 활약했던 Stier와 Richards는 폭력조직의 진화현상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3단계는 약탈자(predator) 단계에서 출

26개(7.1%), ‘경매 및 입찰’ 개입 23개(6.3%), ‘마약류불법유통’ 개입 19개(5.2%), ‘인신 및 성 매매’ 개입 12개(3.3%), ‘부동산투기’ 개입 8개(2.2%) 등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도처에 폭력조직의 생존에 적합한 여건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기업형 폭력조직의 확산

가. 기업형 폭력조직 자생현황

<표 2-2>는 경찰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소속경찰서 관내에 ‘기업형 폭력조직’ 및 ‘기생형 폭력조직’ 존재 여부를 확인해준 응답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소속경찰서가 관리중인 폭력조직 가운데 수괴가 사업가로 변신했거나 조직 자체가 사업체로 위장하여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간주할 만한 폭력조직의 존재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보면, 모두 21개 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폭력조직이 할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생형 폭력조직’으로 간주할 만한 폭력조직의 존재 여부를 밝혀준 내역을 보면, 모두 42개에 달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폭력조직이 할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형 폭력조직’의 존재를 확인해준 21개 경찰서와 ‘기생형 폭력조직’의 존재를 확인해준 42개 경찰서의 소재지는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밝힐 수가

발하여 기생자(parasite) 단계를 거쳐 공생자(symbiont) 단계에 도달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을 일컫는다. 초기 결성단계에서는 업소나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앞세운 갈취(약탈자)로 생존을 이어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고리대금업·성매매·마약유통 등 폭력을 쓰지 않아도 고수익이 뒤따르고 피해자의 신고나 저항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victimless crimes)에 개입(기생자)하여 재산이 모이면,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 등과 같은 합법영역에서 사업기반을 다져 사회의 제도권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이다. 폭력집단이 약탈자 및 기생자 단계를 거쳐 공생자 단계에 근접하면 범죄조직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폭력적 행태들을 더 이상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에 합법적인 재화나 서비스 공급업체들과 시장쟁탈전을 벌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서술돼 있다. Edwin H. Stier and Peter R. Richards,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Organized Crime Control : The Need for a Broadened Perspective" in Major Issues in Organized Crime; 1987, pp.65-80 참조.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21개 경찰서와 42개 경찰서가 전적으로 다른 것인지, 혹은 중첩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여 역시 밝힐 수가 없다.

<표 2-2> 관내에 기업형 및 기생형 폭력조직이 자생하는 경찰서

구 분	기 업 형	기 생 형
경 찰 서(개)	21	42
구 성 비(%)*	9.0	17.9

* ‘구성비(%)’는 전국의 234개 경찰서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 ‘기업형’ 또는 ‘기생형’ 폭력조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찰서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나. 폭력조직들의 진화정도

<표 2-3>은 경찰관 응답자들이 “관내에서 최근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경찰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의 수 및 활동수준”을 밝혀준 응답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경찰관리대상에 포함된 폭력조직 327개(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4-8> 참조) 가운데도 107개 폭력조직의 특히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들 107개 폭력조직 가운데 자립적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공생단계’에 근접 혹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 조직은 29개(27.1%)로 나타나 있다. 이는 관할구역 내에 ‘기업형 폭력조직이 있다’고 확인해준 21개 경찰서 가운데 일부는 그러한 조직을 2개 이상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찰서 관내에 기업형 폭력조직들이 몇 개나 활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여 밝힐 수가 없다.

한편, 107개 폭력조직 가운데, 폭력을 앞세워 갈취수익으로 조직을 꾸려가는 단계를 넘어서 범죄자 없는 범법행위(victimless crimes)에 주로 개입하여 ‘기생단계’까지 진화하였다고 여길 만한 폭력조직은 54개(50.5%), 기타 아직 약탈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조직은 24개(22.4%)로 각각 집계되었다. 하지만, 어느 경찰서 관내에 기생형 폭력

조직과 약탈형 폭력조직이 몇 개씩 할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여 밝힐 수가 없다.

<표 2-3> 최근 활동이 왕성한 폭력조직들의 진화단계별 분포

구 분	기 업 형	기 생 형	기 타	계
폭력조직(개)	29	54	24	107
구 성 비(%)*	27.1	50.5	22.4	100.0

* 경찰이 전국에서 관리중인 폭력조직의 수를 327개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경찰이 ‘기업형’ 또는 ‘기생형’으로 확인해준 폭력조직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이상의 조사결과를 ‘폭력조직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2006년 현재 전국에서 할거중인 폭력조직 가운데 일부는 갈취나 기생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변모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폭력조직의 대다수는 여전히 노점상갈취 혹은 유흥업소나 공사현장 등을 상대로 자릿세나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강요하여 갈취하는 약탈단계 아니면 기생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개중에는 불법행위로 거대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유흥업소·사행성 성인오락실·건설회사·건축사무실 등과 같은 합법영업을 운영하면서 유능한 사업가나 시련을 극복한 기업인으로 행세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 기업형 폭력조직 사법처리현황

<표 2-4>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사업가로 위장하고 범법행위에 개입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2001년에는 4건, 2002년에는 7건이 적발되었고, 2003년 이후부터는 적발건수가 늘어나 2003년 12건, 2004년 15건이었다가 2005년에는 다시 줄어 총 10건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범죄혐의(죄명) 유형별 추이를 보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이권(권리)갈취는 2001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적발건수가 두 번째

로 많은 사기범죄도 2005년에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조직폭력배 개입범죄의 적발건수는 주로 사기범죄와 이권갈취범죄의 증감 여부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2-4> 최근 5년간 기업형 폭력조직 개입범죄 처리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이권갈취	1 (25.0)	3 (42.9)	4 (33.3)	4 (26.7)	7 (70.0)	19 (38.8)
사 기	2 (50.0)	2 (28.6)	6 (50.0)	5 (33.3)	0 (0.0)	15 (30.6)
횡 령	0 (0.0)	1 (1.4)	0 (0.0)	4 (26.7)	1 (10.0)	6 (12.2)
불법채무변제	1 (25.0)	0 (0.0)	1 (8.3)	1 (6.7)	0 (0.0)	3 (6.1)
탈 세	0 (0.0)	1 (1.4)	1 (8.3)	0 (0.0)	0 (0.0)	2 (4.1)
뇌 물	0 (0.0)	0 (0.0)	0 (0.0)	0 (0.0)	1 (10.0)	1 (2.0)
주가조작	0 (0.0)	0 (0.0)	0 (0.0)	1 (6.7)	0 (0.0)	1 (2.0)
불법사채업	0 (0.0)	0 (0.0)	0 (0.0)	0 (0.0)	1 (10.0)	1 (2.0)
계	4 (8.3)	7 (14.5)	12 (27.1)	15 (30.6)	10 (20.8)	48 (100.0)

<표 2-5>는 전국의 지방검찰청별로 조직폭력배가 사업가로 위장하고 범법행위에 개입하다 검거된 사건을 사법처리한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지검이 20건으로 전체의 40.8%를 처리하고, 그 다음은 광주지검 8건(16.3%), 대구지검 7건(14.2%)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검찰의 조직폭력 현황자료에서, 자립기반을 갖춘 ‘기업형 폭력조직’이 서울, 광주, 대구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사실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다.

전국의 10개 지방검찰청이 조직폭력배가 사업가로 위장하고 개입한 범죄사건을 처리한 내역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서울지검은 이권(권리)갈취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기 4건, 횡령 3건씩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5> 지방검찰청별 기업형 폭력조직 개입범죄 처리현황

구 분	서 울	인 천	수 원	청 주	대 구	부 산	울 산	광 주	전 주	제 주	계
사 기	4 (20.0)	-	2 (100)	-	4 (57.1)	2 (50.0)	1 (100)	2 (25.0)	-	-	15 (30.6)
횡 령	3 (15.0)	-	-	-	-	-	-	1 (12.5)	1 (50.0)	1 (100)	6 (12.2)
뇌 물	-	-	-	-	-	-	-	1 (12.5)	-	-	1 (2.0)
불법채무 변제	-	-	-	-	1 (14.3)	1 (25.0)	-	1 (12.5)	-	-	3 (6.1)
이권갈취	11 (55.0)	2 (100)	-	-	2 (28.6)	1 (25.0)	-	3 (37.5)	-	-	19 (38.8)
주가조작	1 (5.0)	-	-	-	-	-	-	-	-	-	1 (2.0)
탈 세	1 (5.0)	-	-	-	-	-	-	-	1 (50.0)	-	2 (4.1)
불법 사채업	-	-	-	1 (100)	-	-	-	-	-	-	1 (2.0)
계	20 (40.8)	2 (4.1)	2 (4.1)	1 (2.0)	7 (14.2)	4 (8.1)	1 (2.0)	8 (16.3)	2 (4.1)	1 (2.0)	48 (100.0)

이외에 주가조작, 조세포탈도 각 1건씩 처리하였다. 인천지검이 처리한 2건이 모두 이권(권리)갈취였다. 수원지검은 처리한 2건 모두가 사기였다. 청주지검은 불법사채업 1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구지검은 사기 4건, 불법채무변제 1건, 불법사채업 1건을 처리하였다. 부산지검은 사기 2건과 불법채무변제 1건, 이권(권리)갈취를 각 1건씩 처리하고, 울산지검은 사기 1건을 처리하였으며, 광주지검은 이권(권리)갈취 3건, 사기 2건을 처리하였다. 전주지검은 횡령과 탈세를 각 1건씩 처리하고, 마지막의 제주지검은 횡령 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기업형 폭력조직의 활동영역

<표 2-6>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자립적 기반을 가진 기업형 폭력조직’들의 주된 활동영역을 확인해준 응답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면, 29개의 기업형 폭력조직이 49개에 이르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자립기반을 갖춘 기업형 폭력조직 가운데는 한 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립기반을 갖춘 기업형 폭력조직들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유흥업계(30.6%)이며, 대부분 업소를 직접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형 폭력조직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12.2%), 사채업·채권추심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그밖에 재개발사업, 유통업, 부동산경매, 직업소개·용역업, 신용카드업, 상가관리 대행, 연예기획사 운영 등도 기업형 폭력조직들의 주된 활동무대이자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6> 기업형 폭력조직의 주된 활동영역

구 분	개입조직(개)	진출율(%)
유흥업소운영	15	30.6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	6	12.2
사채업, 채권추심업	6	12.2
재개발사업	3	6.1
유통업	3	6.1
부동산경매	2	4.1
직업소개·용역업	2	4.1
신용카드업	2	4.1
상가관리 대행	1	2.0
연예기획사 운영	1	2.0
기 타	8	16.3
계	49	100.0

* ‘진출율(%)’은 전국에서 할거중인 ‘기업형 폭력조직’의 수를 29개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각 활동영역에서 활동중인 폭력조직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마. 조직폭력배들의 최근 동향

대검찰청은 2006년 3월 현재 검찰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력조직 491개파 및 이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10,193명을 관리하고 있다.⁶⁾ 이러한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검찰은 조직폭력의 최근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활동 위축상태에서 탈피하여 재발호의 조짐을 지적하고 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폭력조직은 외부적 활동을 자제하고 간접적인 폭력행사를 선호하였으나, 최근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이완된 틈을 타 재발호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2006년 1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20세기파’ 등 조직폭력배 50여명이 성인오락게임업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백주에 흉기로 무장하고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을 집단구타하여 40여명이 구속된 사건을 들었다.

둘째는, 과거에 폭력세계를 분할하여 지배했던 대형 폭력조직들이 재결합을 시도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소위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두목들이 모두 출소한 이후로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금융, 부동산, 오락실 등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합법을 가장하여 조직재건을 기도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지방의 주요 폭력조직들(부산 칠성파, 신20세기파, 광주 무등산파, 신양OB파, 인천 풀망파 등)도 두목이 구속되거나 간부급조직원들이 대부분 40대를 넘어 조직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지만, 세 과시를 위한 범죄행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하였다.

셋째는, 전국의 군소 폭력조직들도 재건 기도 및 활동영역 확대를 기도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두목, 행동대장급 간부가 두목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조직재건을 기도하거나(수원 ‘남문파’ 등),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만기출소하여 행동대장급 이상의 간부급으로 성장하여 세를 규합하는 등(의정부 ‘세븐파’ 등)의 조직재건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조직들의 활동이 현저히 위축된 틈을 타, 신흥 유흥가를 중심으로 군소 폭력조직들이 세를 규합,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부

6) 대검찰청, 「조직폭력 근절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06년 3월 15일.

산 ‘사상터미널파’, ‘서면파’ 등)도 지적하고 있다.

넷째는, 폭력조직간의 연계가 활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경비 절감 등을 위해 평상시에는 소조직 형태로 운영하다가 필요시에는 타조직의 인력을 지원받아 조직의 기동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본보기로, 2006년 1월 부산영락공원 폭력사태에서 ‘칠성파’와 대립하고 있던 ‘20세기파’, ‘유태파’, ‘영도파’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울산지검 단속사례에서도 ‘칠성파’와 ‘양은이파’ 조직원들이 절친하게 지내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례를 들었다.

다섯째는, 일부 폭력조직들의 통합현상을 지적하였다. 폭력조직들 가운데 일부는 자금취득 활동을 더욱 다양화 내지 지능화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인근 군소조직들을 흡수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상도동파’와 ‘산이슬파’는 ‘범이글스파’로, 부산 ‘연산파’·‘연산로터리파’·‘연산통합파’는 ‘재건연산통합파’로, 부산 ‘신20세기파’·‘재건20세기파’는 “통합20세기파”로 각각 통합했던 사례를 대표적 본보기로 들었다.

Ⅲ.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관계

1. 국민의 피해신고 기피정서

가. 조직폭력피해 신고실태

폭력조직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풍토야말로 폭력조직을 사실상 비호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조직폭력피해에 따른 신고실태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시도해보았다. <표 3-1>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밝혀준 사람들(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3-34> 내지 <표 3-59> 참조)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준 응답내역을 구분하여 인용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피해경험을 밝혀준 137명 가운데 29.2%(40명)가 ‘신고하였다’고 응답하고 나머지 70.8%(97명)는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의 신고 여부			단위 : 명(%)
구 분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계
응답인원(명)	40	97	137
비 율(%)	29.2	70.8	100.0

<표 3-2>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98명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여섯 가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33.7%(33명)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를 지적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하고, 다음으로는 29.6%(29명)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서’를 지적하여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나머지 응답내역은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할 것 같지 않아서’ 10.2%(10명), ‘보복이 두려워서’ 9.2%(9명),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6.1%(6명), ‘증거가 없어서’ 6.1%(6명), ‘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3.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비교적 많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할 법도 하다. 피해경험자 98명 가운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및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62명)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을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감수하기로 한 이유’를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상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2>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 분	응답인원(명)	비 율(%)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33	33.7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29	29.6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10	10.2
보복이 두려워서	9	9.2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6	6.1
증거가 없어서	6	6.1
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3	3.1
기 타	2	2.0
계	98	100.0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명)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수사현장에서 조직폭력을 직접 다루는 이들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자못 크다. 만약 조직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 국가와 형사사법당국으로서는 그보다 더 반가운 일도 없을 것이며, 보람과 희망을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 그밖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다른 이유들은 제도보완이나 교육을 통한 개선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조직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사실을 숨기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폭력조직을 엄벌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폭력조직의 확산을 돕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나. 국민의 소극적 수사협조태도

<표 3-3>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4명이 ‘본인이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

부를 밝혀준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59.1% (1213명)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841명)로 협조의지를 나타낸 비율이 거부 의사를 나타낸 비율보다 18.2% 높다. 그런데 앞의 <표 3-1>에서 조직폭력피해자들의 실제 신고율이 29.2%였던 기억을 상기하면, 협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더라도 막상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평소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표 3-3> 조직폭력수사를 위한 협조 의사

구 분	있 다	없 다	계
응답인원(명)	1,213	841	2,054
비 율(%)	59.1	40.9	100.0

그렇다면, 궁극증은 다시 ‘조직폭력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 신고를 포기하는 이유’로 회귀하며, 그 해답은 <표 3-2>에 열거된 일곱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인간의 심리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사기관이 조직폭력을 수사하려는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적극 제보하지 않거나, 증인에게 기대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혹은 축소하여 진술하는 사례들은 폭력조직의 생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2. 조직폭력배에 대한 우호감정

가. 폭력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호감

검찰 수사요원 210명이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흔히 지목되는 5가지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밝혀준 응답내역(대검찰

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3-7> 참조)을 보면, 전체 응답인원의 22.9%가 ‘폭력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국민정서’를 지목하였다. 여기에다가 ‘폭력조직원을 자원하는 풍토’를 지목한 16.1%까지 합산하면 전체 응답자의 40% 정도가 ‘국민 가운데 조직폭력세계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호감으로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 믿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이 ‘조직폭력배들은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가정에 공감을 나타낸 비율은 64.8%(1,331명)이고 ‘남자답다’는 묘사에 대해서도 4명당 1명의 비율로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국민 가운데 조직폭력세계를 막연히 동경하거나 폭력조직에 가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사기관이 힘들어서 조직폭력사범을 단속하여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폭력조직으로 유입되어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을 근절하는 문제는 요원한 과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하여 폭력세계의 단면들만을 흥미 위주로 편집해놓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장래에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지적까지 상기하면, 우리사회에 그와 같은 풍조와 정서가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표 3-4>는 전국의 성인 남녀 2,055명이 ‘폭력조직은 반사회적 집단이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84.9%(1,747명)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5.0%(308명)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다수는 ‘폭력조직은 반사회적 집단이고 두려운 존재이며 사회적으로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약 15% 정도는 폭력조직의 사회적 유용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국민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4> 폭력조직의 사회적 유용성 인정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인원(명)	963	784	292	16	2,055
비율(%)	46.8	38.1	14.2	0.8	100.0

<표 3-5>는 전국의 성인 남녀 2,055명이 ‘범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89.3%(1,835명)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22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범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1% 정도는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조직폭력을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표 3-5>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조직을 이용할 의향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인원(명)	1,021	814	203	17	2,055
비율(%)	49.7	39.6	9.9	0.8	100.0

<표 3-6>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5명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90.0% (1,850명)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9%(205명)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 정도

는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조직폭력을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도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표 3-6>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폭력조직을 이용할 의향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인원(명)	1,053	797	190	15	2,055
비 율(%)	51.2	38.8	9.2	0.7	100.0

<표 3-7>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5명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90.8% (1,866명)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2%(189명)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더라도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9% 정도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조직폭력을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듭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표 3-7> 다른 대안이 없다면 폭력조직을 이용할 의향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인원(명)	1,093	773	179	10	2,055
비 율(%)	53.2	37.6	8.7	0.5	100.0

<표 3-8>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5명이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

위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87.0%(1789명)가 '그렇지 않은 편'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266명)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2.9% 정도는 '청부폭력에는 청부폭력으로 대항'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표 3-8> 조직폭력배의 공격에는 조직폭력배로 대항할 의향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응답인원(명)	1,003	786	237	29	2,055
비 율(%)	48.8	38.2	11.5	1.4	100.0

다. 국민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표 3-9>는 전국의 성인 남녀 2,054명이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응답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4.7%(1,946명)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3%(108명)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앞의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를 연계시켜 보면, 국민과 조직폭력배간에 사실상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표 3-9> 조직폭력배와 친분유지 여부

구 분	없 다	있 다	계
응답인원(명)	1,946	108	2,054
비 율(%)	94.7	5.3	100.0

따지자면, 국민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나 친인척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지거나, 업무상의 일로 조직폭력배를 만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알고 지내는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빌려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과 조직폭력배는 서로가 다른 근본을 가지고 각기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남남 사이가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의 밀착관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표 3-10>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2명이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해본 경험’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99.2%(2,036명)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0.8%(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앞의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들을 연계시켜 보면,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고 질문했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우리사회에 실제로 많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표 3-10> 사건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해본 경험

구 분	없 다	있 다	계
응답인원(명)	2,036	16	2,052
비 율(%)	99.2	0.8	100.0

<표 3-11>은 전국의 성인 남녀 2,051명이 ‘평소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을 인용한 것이다. 응답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2.3%(1894명)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7%(157명)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직접 조직폭력배를 이용하여 법률문제

를 해결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가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앞세워 법률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매우 많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재판절차 대신에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빌어서 해결’하는 사례가 우리사회에 적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표 3-11>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린 사례를 들은 경험

구 분	있 다	없 다	계
응답인원(명)	1,894	157	2,051
비 율(%)	92.3	7.7	100.0

3. 폭력조직을 떠받치는 인적기반

가. 제2선의 ‘막후세력’

전국의 폭력조직현황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조직폭력 가담 인원으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폭력조직의 제2선에서 막후실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전국에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이야말로, 비록 전면에 나서는 않지만, 폭력조직간의 충돌을 막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폭력세계의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에 폭력조직에서 쌓은 악명을 재산으로 업소의 보호자로 군림하거나 혹은 재력가나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정·관계와 폭력조직을 연결해주거나 폭력조직간 이권다툼 등을 중재하는 이른바 ‘해결사(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12>는 전국 경찰서의 조직폭력담당 경찰관들이 ‘경찰의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폭력조직의 ’실세(實勢)‘라고 할 만한 인물의 수’를 확인해준 응답내역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국의 234개 경찰서 가운데 40개 경찰서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소속한 경찰서 관내에 폭력조직의 막후세력으로 간주할 만한 인물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인원은 533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2> 폭력조직세계 제2선의 ‘막후세력’ 현황

지 역		인 원	구성비
서울특별시		4	0.8
경인	인천	-	-
	경기	37	6.9
	소 계	41	6.9
부경	부산	2	0.4
	울산	11	2.1
	경남	62	11.6
	소 계	75	14.1
대경	대구	3	0.6
	경북	58	10.9
	소 계	61	11.5
충부	대전	-	0.0
	충남	11	2.1
	충북	31	5.8
	소 계	42	7.9
호남	광주	-	-
	전남	62	11.6
	전북	215	40.3
	소 계	277	51.9
강원		20	3.8
제주		74	13.9
합 계		533	100.0

폭력조직의 막후세력으로 파악된 533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보고된 인원은 20명(3.7%)에 불과하여 나머지 96% 정도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파악된 인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실제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컨대, 인구가 집중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에 비하여 이동인구가 많고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여 수사기관의 감시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관내에 조직폭력 막후세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존재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이들의 행동반경이나 친교관계 등을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통계상으로는 그러한 인물들이 대도시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위지역별 분포인원을 비교해보면, 전북이 215명(40.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주 74명(13.9%), 전남 62명(11.6%), 경남 62명(11.6%), 경북 58명(10.9%)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전국의 16개 단위지역 가운데서 특히 전북지역에서 제2선의 막후세력이 현저하게 많이 보고된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북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북지역에는 특별시는 물론이고 광역시마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조폭전력자들의 행동거지를 면밀히 관찰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폭력조직의 하부구조

폭력조직이 기존의 세력과 활동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조직원의 충원에 필요한 공급기반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폭력조직의 통솔체계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는 이른바 ‘행동대원’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불량서클 등을 중심으로 ‘폭력패거리’를 형성하고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를 유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폭력조직의 인적기반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앞서 서술한 ‘제2선의 막후세력’과 아울러서 전국의 폭력패거리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13>은 전국 경찰서의 조직폭력전담자들이 소속경찰서 관할구역의 ‘폭력패거리 수’를 확인해준 응답내역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234개 경찰서 가운데 112개 경찰서의 전담자가 관할구역 내에 폭력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조직폭력원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혹은 동네깡패)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으로부터 추론된 폭력패거리의 총수는 2,587명으로 나타났다.

<표 3-13> 전국의 ‘폭력패거리’ 현황

지 역		인 원	구성비
서울특별시		350	13.5
경인	인천	10	0.4
	경기	452	17.5
	소 계	462	17.9
부경	부산	274	10.6
	울산	72	2.8
	경남	278	10.7
	소 계	624	24.1
대경	대구	55	2.1
	경북	315	12.2
	소 계	370	14.3
충부	대전	150	5.8
	충남	110	4.3
	충북	15	0.6
	소 계	275	10.7
호남	광주	15	0.6
	전남	160	6.2
	전북	231	8.9
	소 계	406	15.7
강원		100	3.9
제주		-	0.0
기타		115	4.4
합 계		2,587	100.0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폭력배 현황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폭력조직의 하층부를 형성하는 전국의 폭력패거리들은 성인 조직폭력 현상의 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한 근원을 이루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

부'라 함)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년 동안 교육부와 경찰 합동으로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전국에서 839개의 불량서클을 적발하여 해체시키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중·고생 6,604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⁷⁾ 이러한 조치로 학교주변의 불량서클과 폭력패거리들이 사라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폭력패거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이 452명(17.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 350명(13.5%), 경북 315명(12.2%), 경남 278명(10.7%), 부산 274명(10.6%) 순으로 나타나 있다. 경기지역이 폭력조직의 공급원이 되거나 새로운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검찰청의 연구용역보고서(<표 4-2>, <표 4-11> 참조)에서 경기지역이 폭력조직 가담인원 및 신흥폭력조직 적발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제주도는 폭력패거리가 1명도 파악되지 아니하여 조직폭력배 공급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천, 광주, 충북의 경우도 폭력패거리가 15명 이하로 파악되어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대구, 울산, 강원, 충남의 경우도 폭력패거리가 100명 이하이거나 약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폭력조직의 생존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전국의 신흥폭력조직

경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에 걸쳐서 52개의 신흥폭력조직을 적발하여 조직폭력가담 혐의자 1,29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흥폭력조직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지역으로 13개 조직이 적발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8개, 경상남도 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지역에서는 2005년도에 신흥폭력조직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거

7)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회의자료」, 2006년 1월 3일, 1쪽.

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418명(32.3%)으로 가장 많이 검거하였고,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335명, 25.9%), 경상북도(132명, 10.2%), 대전광역시(109명, 8.4%)의 순으로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2005년의 신흥폭력조직 단속현황

지 역		조 직(개)		인 원(명)	
		개	구성비	명	구성비
서울특별시		3	5.8	68	5.3
경인	인천	-	0.0	-	0.0
	경기	13	25.0	418	32.3
	소 계	13	25.0	418	32.3
부경	부산	4	7.7	46	3.6
	울산	-	0.0	-	0.0
	경남	5	9.6	52	4.0
	소 계	9	17.3	98	7.6
대경	대구	4	7.7	335	25.9
	경북	3	5.8	132	10.2
	소 계	7	13.5	467	36.1
중부	대전	8	15.4	109	8.4
	충남	3	5.8	65	5.0
	충북	-	0.0	-	0.0
	소 계	11	21.2	174	13.4
호남	광주	4	7.7	7	0.5
	전남	3	5.8	33	2.5
	전북	-	0.0	-	0.0
	소 계	7	13.5	40	3.0
강원		2	3.8	30	2.3
제주		-	0.0	-	0.0
기타		4	7.7	75	5.8
합 계		52	100.0	1,295	100.0

검찰에 파악된 폭력조직 및 가담인원이 가장 많은 부산지역의 신흥폭력조직 적발건수(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4-2> 참조)를 보면, 1년 동안 적발한 폭력조직(4개)은 경기지역(13개)의 1/3에도 미달하고, 같은 기간에 적발한 조직폭력가담자(46명)는 경기지역(418명)의 1/1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파악된 폭력조직 및 폭력가담자가 부산 다음으로 많았던 서울지역도 같은 기간 동안 부산지역 비슷한 수준의 건수 및 인원을 적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부산과 서울은 기존에 파악된 폭력조직들의 활동기반이 확고 부동하거나 혹은 조직폭력배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정착되어, 두드러지게 특출한 인물이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세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부산과 서울에서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와 단속이 심해서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에 들어가 입지를 넓히는 쪽을 택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흔히 ‘수도권’으로 지칭되는 경기도 일대의 위성도시마다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수반되는 이권사업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착조직의 세력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조직폭력배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넷째는, 수도 서울에 활동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세력 혹은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주변의 위성도시들에 측근들을 보내 하부조직을 만들거나 현지의 불량배들로 하여금 하부조직을 결성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많을 개연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폭력을 무기로 전국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이권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계와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실로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언행은 기성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오히려 한 술 더 뜨기도 하는 이른바 ‘폭력패거리’가 전국에 2천5백여명이나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폭력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공급기반을 건

고하게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폭력조직의 예비세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곧 사법당국의 대응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전국에 활거하는 조직폭력배, 제2선의 막후세력, 그리고 폭력패거리들이 합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건전한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단속법규와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정책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V. 실증조사자료 분석결과

1. 폭력조직의 불법소득원 산재

실증자료 분석결과는 우리사회의 도처에 폭력조직의 생존에 적합한 불법소득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잘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대다수는 ‘연예인 및 유흥업소 갈취’, ‘이권 분쟁 개입(폭력행사 대행)’, ‘사행성영업(도박·경마 등)’, 불법 및 변태영업 ‘개입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위력이나 위세를 앞세우면 쉽게 갈취나 개입이 가능한 탈법행위들을 소득원으로 하여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둘째, 이권분쟁에 개입하여 폭력행사를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폭력조직이 121개나 파악된 것은 우리사회에 청부폭력에 대한 수요가 항시 상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화해절차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세간에서 흔히 회자되는 ‘해결사’를 통해 이익을 지키거나 채권회수 등을 실현하려는 풍조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행성영업(도박, 경마 등)에 개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101개나 파악된 사실은,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파경이나 국가경제의 왜곡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조직폭력배들의 악질근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불법 및 변태업소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63개나 된다는 것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의 절대적 지지로 국민적 관심 속에 탄생한 동 법률의 금지 규정과 처벌조항들이 폭력조직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마약류불법유통에 관여하는 폭력조직이 전국에서 19개나 파악된 사실 역시,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파경이나 국가경제의 왜곡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조직폭력배들의 악질근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폭력조직 10개 가운데 1개의 비율로 ‘변칙적 위장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폭력조직이 불법행위로 자금을 비축하여 제도권편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국내 폭력조직 가운데 불법행위로 사업자금을 축적하여 사회제도권의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둔갑해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워도, 폭력조직의 진화현상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2. 폭력조직의 기업화 추세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3명 가운데 51.5%는 ‘조직폭력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폭력행위’로 ‘조직폭력의 합법적 기업화’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조직폭력 가운데 향후 가장 우려되는 폭력행위’를 지목하는 문항에서도 전체의 78.8%가 ‘조직폭력의 합법적 기업화’를 지적하였다. 검찰 수사요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97.9%가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경찰 수사요원들도 88.6%가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단별로 응답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 검찰, 경찰이 ‘폭력조직들이 합법을 가장한 사업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조직폭력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복역중인 재소자들도 가운데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인 인원이 68.3%나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직폭력의 세계에도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생존법칙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조직이 ‘공생단계’를 넘어 ‘사회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갈취나 폭력 등 불법행위 절제’ 추세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던 사실도 폭력조직의 진화현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조직구성인원 감축(조직의 슬림화)’, ‘갈취나 폭력 등의 불법적 행위 절제’,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정·재계 유력인사와의 연계 강화’, ‘외국 폭력조직과의 연계 모색’ 등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심지어는 재소자들까지도 높은 비율로 공감을 나타낸 사실도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를 수증한 정서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모두가 국민과 폭력조직의 공존공생 관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것이라 생각된다.

3.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15.0% 정도는 ‘폭력조직의 반사회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10.7% 정도는 ‘법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9.9% 정도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응답자들의 9.2%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서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같은 응답자들의 12.9%는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공격을 한다면, 똑같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

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5.3%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응답하고, 0.8%는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해본 경험’을 고백하였으며, 7.7%는 ‘평소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조직폭력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아울러서 조직폭력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직폭력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4.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표 5-1> 참조)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이권분쟁에 개입하여 폭력행사를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폭력조직이 121개나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세간에서 흔히 회자되는 ‘해결사’를 통해 이익을 지키거나 채권회수 등을 실현하려는 풍조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 ‘청부폭력’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표 5-2> 참조)에 따르면, 전국의 폭력조직 가운데 각종 활동이 왕성하여 검찰이 활동성을 “강”급으로 분류한 87개 폭력조직 가운데 45개(21.5%) 조직이 이권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청부폭력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폭력조직들이 이권다툼에 개입하여 폭력행사를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를 부추기는 배후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설문응답자의 15% 정도는 ‘폭력조직은 반사회적 집단이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법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내비친 응답자도 9.9%나 되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에 달하였다.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자신을 공격한다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9%에 달하였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0.8%는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해본 경험’을 고백하였다.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청부폭력, 살인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들이 실제로 없지 않고, 자살하거나 가출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주변에서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은 우리사회에서 청부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청부폭력에 대한 수요기반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5.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2006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은 무허가 업소까지 합하여 각각 1만5천여 곳과 4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다.⁸⁾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일확천금’을 미끼로 내걸고 근로소득자, 영세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군인, 공무원, 심지어는 노인과 청소년들까지 업소로 유인하여 파멸의 길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업소 1곳당 하루에 10명씩만 출입하다고 가정해도 매일 2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사행성 성인오락에 매달려, 전국의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의 하루 판돈만도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이 “가산탕진→가정불화→이혼→폐가망신”으로 이어지는 ‘폐가망신’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연구용역보고서(<표 5-1> 참조)는, 전국에 걸쳐서 사행성영업(도박, 경마 등)에 개입하고 있는 폭력조직의 수가 무려 101개나 파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활동이 왕성하여 검찰이 ”강“급으로

8) 한겨레신문, “비상등 켜진 도박공화국”(기획연재), 2006년 7월 25일자 참조.

분류한 87개 폭력조직 가운데 ‘사행성영업(도박·경마 등)’에 개입하고 있는 조직만도 39개에 달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개입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폭력조직도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는 조직폭력배들이 사행성 성인오락업계에 단순히 진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 업계의 핵심 이권들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막대한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어 폭력조직의 세력기반과 활동범위가 순식간에 확장되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은 폭력조직이 가장 많이 할거리는 부산광역시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영화 <친구>의 모델이 되었던 적도 있고, 국내 최대의 폭력조직으로도 손꼽히는 부산의 칠성파와 신20세기파를 필두로 하여, 서면파·유태파·영도파 등 한동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지역의 주요 폭력조직전부가 사행성 성인오락사업으로 큰돈을 모아 ‘화려하게 부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오락사업과 관련된 이권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다보니, 오락실운영과 상품권공급, 환전, 오락게임기제조 등을 둘러싸고 폭력조직 혹은 조직폭력배 상호간에 잔혹한 세력다툼과 ‘상생’을 위한 합종연횡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들의 사행성 성인오락사업에 개입하여 일확천금의 횡재를 거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7월에 국가정보원이 대통령보고용으로 작성한 ‘사회악 일소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급’이라는 문건은 “전남 영광과 중간보스 안아무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홍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파 부두목 오아무개는 하루 평균 매출 1억~5억원의 무허가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⁹⁾

6.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대검찰청의 연구용역보고서(<표 5-1> 참조)에서 폭력조직들의 ‘범법행위 개입실태’를 고찰한 내용 가운데는 ‘마약류불법유통에 관여’하는 폭

9) 중앙일보, “국정원, 사행성 게임폐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8월 26일자 참조.

력조직이 전국에서 19개나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개입정황은 알아보지 않았으나,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주된 범죄유형으로 하여, 마약류의 도매 및 소매 거래, 마약류 투약, 의료기관 또는 제약회사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에 개입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국제특급우편 등을 이용하면 운반에 수반되는 적발위험을 피해서 외국산 마약류를 국내로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원이 궁색한 폭력조직들이 마약류불법거래에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단속통계를 보면, 국민 가운데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이 없고, 환각효과가 뛰어난 외국산 신종마약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종래에는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던 코카인, 헤로인, LSD, 엑스터시(MDMA, 속칭 ‘도리도리’), 야바, 펜폴루라민, 크랙, 블랙코카인 등 다양한 종류의 신종마약들이 꼬리를 물고 적발되고 있다.

7.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앞에서 살펴본 실태들은 폭력조직이 국민생활의 한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폭력조직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사리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틈새들이 우리사회에 무한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기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부지기수로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도박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만들었던 ‘사행성 불법영업(도박, 경마 등)’에 개입하여 불법수익을 올리는 경우만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수법과 술책들을 얼마든지 떠올려볼 수 있다. ‘바다 이야기’ 같은 성인 오락업소를 차리기 위해 건물주를 협박하여 강제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오락기계를 경쟁자들보다 먼저 설치하기 위해 오락기관 매업자를 협박하거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경쟁업소의 개업을 지능적으로 방해하거나,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장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실력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의 단속요원을 금품이나 향응으로 매수하거나, 혹은 영업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위장(돈세탁)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폭력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개입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폭력조직들이 진출하여 각종의 범법행위를 통해 불법소득을 거둘 수 있는 영역의 무제한성을 한층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온라인 사기도박으로 폐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일확천금을 챙기기도 하고, 마약사이트·청부폭력사이트·성매매사이트·포르노사이트·장기알선사이트·밀입국알선사이트 등을 은밀하게 개설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금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수익을 챙기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8. 국민의 수사협력의지 미약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경험 있다’고 응답(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3-34> 내지 <표 3-59>참조)한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표 6-7> 참조)은 70.8%가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미신고자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여섯 가지 가운데 자신의 사유로 밝혀준 응답내역을 보면, 33.7%(33명)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9.6%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조직폭력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수사기관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면 조직폭력배들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으면 수사당국으로서도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아서 폭력조직에게 안전한 생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수사요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직폭력배들의 공갈·협박에 흔히 수반되는 ‘생매장’, ‘가족몰살’, ‘신체훼손’ 등의 끔찍한 언행을 접하면 신고는 커녕,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될 것을 도리어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보편적 반응이 조직폭력배들의 안전

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이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준 응답내역은 59.1%가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조직폭력피해자들의 실제 신고율과 대비시켜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 역시 협조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진정한 이유와는 무관하게,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폭력조직을 적극 비호하는 행동과 사실상을 바가 없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9. 폭력조직의 인적 기반구조 견고

대검찰청의 연구용역보고서(<표 4-1> 참조)는 전국에 걸쳐서 368개의 폭력조직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서 활동상황이 파악된 폭력조직의 수가 383개에 달하고, 폭력조직 가담인원은 12,056명(<표 4-2> 참조)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전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위마다 폭력조직이 골고루 분포하고 폭력조직 가담인원 역시 전국에 골고루 자생하고 있으며, 검찰이 활동성을 “강”급으로 분류한 조직이 전국에 87개에 달하며 이들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인원만도 4,018명에 이르고 있음(<표 4-6> 참조)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조직폭력 가담인원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세계의 막후실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533명이나 존재(<표 3-9> 참조)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적발된 신흥폭력조직이 52개에 달하였으며, 이들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모두 1,295명이 검거(<표 3-11> 참조)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가 하면 장래에 폭력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조직폭력원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혹은 동네깡패)가 전국에 2,587명이나 자생(<표 3-10> 참조)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년 동안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839개의 불량서클을 해체시키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중·고생 6,604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구진, 집단범죄와 그 대책, 수괴 등 간부의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고시, 1982. 4.
- 강병환, 「인간학교」, 화남Br, 2007.
- 강석구,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07, 2005.
- 강익중, 건설업체개입 등 경제폭력배의 실내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강재동 외, 폭력사범의 특별단속과 취역의 법률상 문제(좌담), 사법행정 제92호, 1968. 8.
- 강지원, 조직폭력배의 발호실태와 대응상황, 법무연수원, 1992.
- 고건호, “폭력조직의 활동영역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IV)」, 대검찰청, 1994.
- 권문택, 집단범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제인 김종수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권, 1989. 5.
- 권순택, 폭력조직, 신동아, 1990. 3.
- 경대수, 학교주변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김개두, 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1974. 8.
- 김명곤, 형법상 몰수제도의 현대적 과제 - 약물범죄를 중심으로-민건식검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 김명운,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 김봉태, 조직범죄에 관한 일고찰 -주로 racketeering을 중심으로 -, 부산대 법학연구, 1976. 7.
- 김영룡, 조직폭력사범의 수용실태와 대책, 교정, 1992. 6.

- 김중수, 폭력범대책과 강제노역, 검찰, 1968. 9.
- 김중역, 조직폭력배, 그 계보와 규율, 월간중아, 1991. 1.
- 김주학, 조직상습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김준호, 한국의 청소년 비행지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진세, 집단범죄의 개념과 유형, 검찰, 1976. 8.
- 김태하, 범죄단체조직죄 의의상의 문제점,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 법무연수원, 1991.
- 김학재, 광주지방검찰청 관내 폭력사범의 현황과 대책, 검찰, 1980. 제3집.
- 김효재, 한국의 조직폭력단, 월간조선, 1986. 10.
- 남홍우, 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 법제월보, 1963. 11.
- 류전철, “조직범죄수사기법의 형사사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6.
- 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 박기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조직범죄대책,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법무연수원, 1991.
- 박명광, 「21세기 재외동포의 현황과 과제」, 국회재외동포문제연구회, 2006.
- 박영관, 일본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검찰 1991, 제1집.
- 박재오, “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 IV」, 대검찰청, 1994.
- 박정근, 집단범죄, 사법행정, 1965. 5.
- 백성일,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백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 수사와 증거 -, 육법사, 1985.
- 손진영,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II), 법무연수원, 1986.
- 송명석, 노점상, 포장마차 밀집지역 배후 조직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송태종,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범죄론 및 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 」,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대학원, 2005.
- 안승규, 학교주변 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86.
- 안홍진, 「한국조직폭력의 실태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 (주)정문사, 2004.
- 양태규, 「조직폭력범죄수사론」, 대왕사, 2003.
- 오세경, 조직범죄의 사회공생집단,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 법무연수원, 1991.
- 유인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형사정책학회, 1987.
-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이경재, 국내범죄조직과 외국범죄조직의 연계차단방안,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법무연수원, 1991.
- 이광재, 조직범죄에 있어서 자금동원사례연구,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법무연수원, 1991.
- 이승재, 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상,하), 경찰고시, 1980 4-5.
-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 이재방, 조직치기배사범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이진권,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5.
- 이진한, “조직폭력사범의 실태 및 법률적응상의 문제”, 「강력검사연구논문집(IV)」, 대검찰청, 1994.
- 이철희, “국내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 조직폭력수사 역량 강화 work-shop 자료, 경찰청, 2004.
- 임응 외 5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 임대환, 「국제마약범죄 연구」, 협동문고, 2002.
- 장병립, 외, 현대사회는 조직폭력을 요구하는가(좌담), 광장, 1986. 10.
- 장창호, 조직범죄의 특성 수사시 주의사항,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법무연수원, 1991.
- 전대양 · 송병호, 「조직범죄론」, 형설출판사, 2004, 49-63쪽;
- 전대양, “조직범죄에 대한 시각변화와 그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년 3월.

- 정민수, 일본의 폭력단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9-10.
-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5.
- 조갑제, 코리언 케넥션, 조선일보사, 1989.
- 조근석, 일본의 조직폭력,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1-2.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1.
- 조승식, 조직범죄수사기법,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Ⅱ), -현장수사, 조직폭력수사 -, 대검찰청, 1992.
- 조양은, 「어둠속에 솟구치는 불빛」, (주)학원출판공사, 1995.
- 조일환, 「고독한 나의 투혼」, 문예마당, 2001.
- 조희중, 조직범죄소고, 검찰, 1975.
- 재해범, 한국의 조직폭력, 월간조선, 1989. 8.
- 최근서, 영세민갈취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최명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8.
- 최응렬, 조직폭력의 특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공안행정론집, 1991.
- 최희수, 유흥가주변폭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VII), 법무연수원, 1990.
- 한인섭, 조직폭력범죄의 법적통제 및 조직폭력범에 대한 교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비상근연구위원논문집 제5집, 법무연수원, 1991.
- 한옥신, 폭력범죄의 실태와 선도의 방향감각, 검찰, 1969. 10.
-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9.
- 황인정, 조직범죄에 관한 소고,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Ⅱ), -현장수사, 조직폭력수사 -, 대검찰청, 1992.
- 검찰미래기획단, 「각국의 특별수사기구 연구」, 미래기획단 연구총서Ⅳ, 2007.

검찰미래기획단, 「참고인 진술 확보방안 연구」, 미래기획단 연구총서Ⅲ, 2007.

경찰청, 「경찰백서」, 1996년~2005년.

경찰수사연수원, 「조직폭력범죄수사」, 2007.

대검찰청, 「토의 및 사례발표자료」(강력부장검사회자료 Ⅱ), 1996년 8월

대검찰청, 「조직폭력 현황자료」, 2006년 3월.

법무연수원,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논문집 - 조직범죄 및
마약류사범 대책-, 1991.

법무연수원, 「조직폭력배의 발호실태와 대응방안」, 199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년 2월.

_____,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회의자료」, 2006년 1월.

통계청,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 2005.

한국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91.

동아일보 매거진 신동아 2007년 6월호 특별기획면

월간조선 2007년 4월호 인물면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사회면

II. 국외문헌

Aba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7th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3, pp.3-4; Jay S. Albanese, Dilip K. Das & Arvind Verma, Orgnized Crime: World Perspectives.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3.

Anni, Francis A.J., Black Mafia ; Ethnic Succession in Organized Crime, NY, 1974.

Annual Report of the Organized Crime Drug Enforcement Task Force Program(U.S.Department of Justice), 1989.

Approved Criminal Rico Prosecutions, 1984-1993, OCRS, U. S. Department of Justice(1994).

- Attacking Organized Crime, 1991 National Strategy, 1990 Program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Attorney General), 1991.
- Attacking Organized Crime,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Attorney General, 1991.
- AusTRAC,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and through Australia, 1995.
- Edelhertz, Herbert, "Preface and Acknowledgement" in Major Issues in Organized Crime Control(H. Edelhertz Ed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 S. Department of Justice,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7.
-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 Chicago : Nelson-Hall, 1990.
- Hughes Gordon & Langan Mary, Good or Bad Business? : Exploring Corporate and Organized Crime, in: Muncie & McLaughlin(Eds.), The Problem of Crime, 2001.
- Kelly, Robert J., "The Nature of Organized Crime and Its Operations" in Major Issues in Organized Crime Control(H. Edelhertz Eds.).
- Klaus Von Lampe, 2004, Making the second step before the first: Assessing organized crime: the case of Germany, Crime, Law & Social Change, 42:227-259.
- Nelli, Humbert S., The Business of Crime, Oxford University Press, NY, 1976.
- Nuno Garoupa, 2000, The economics of organized crime and optimal law enforcement, Economic Inquiry Vol. 38, No.2. 278-288.
- Philip D. Bougen, 2000, Organizational Crime, Auditors and Liberal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Law, Vol.28; 69-82.
- President's Commission of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 Organized Crime,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 President's Commission on Organized Crime, "Money Laundering",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38, no. 3, Summer 2001.
- Steir, Edwin H. & Richards, Peter R.,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Organized Crime Control" in Major Issues in Organized Crime
Control(H. Edelhertz Eds.).
- Stergios Skaperdas,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organized crime :
providing protection when the state does not, Economics of
Governance Vol.2.
- Tom Vander Beken, 2004, Risky Business: A Risk-based methodology
to measure organized crime, Crime, Law & Social Change,
41:471-516.

A Study on the Circumstances Enabling the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to Survive in the Society

Cho, Byung-In*

Son, Chang-Wa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beliefs that two characteristic dimension of our society itself has contributed to the parasitic dwelling and rapid expansion of the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1) there exist numerous resources in our community that enable the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to accumulate much amount of money easily, (2) some portions of the people in our community, in reality, maintain or keep close symbiotic relation with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actual intents.

For research purpose, "Organized violence" was operationally defined to explain the deviant unlawful behaviors utilized by violent gangsters in groups in the form of verbal threats or physical violence, or intervening into benefit-oriented conflicts, illegal business, public tender competition, illegal brokerage, exclusive supply of specific goods, disregard of official process, or contract violence, resulting in illegal income finally possessed by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In Chapter II, the author examined various dimensions of common resources that enables the organized criminal organizations to survive by providing sufficient nutritions necessary for their long run and daily life. In Chapter III, the author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community in which some portion of the residents, in reality, protect the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s by hesitating to report their victimization to police or voluntarily keeping symbiotic relations with

* Director of the Special Crime Research Center, Senior Research Fellow, Ph.D. in Law

** Doctoral Student at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them. In Chapter IV, instead of conclusion, the author briefly summarized the implications stemmed from scientific analysis of empirical data into nine categories.

주제어 : 폭력조직, 기업형폭력조직, 조직폭력,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범죄, 불법소득원, 청부폭력, 불법마약거래

Keywords :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 business-type violent criminal organization, organized violence, organized violent criminal, organized violent crime, illegal income resources, employed violence, illegal drug trafficking